

의안번호	2214314
의 퇴 인	이양수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0.
추 계 번호	25C6205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7,800만원(연평균 7,6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(안 제13조의2제2항)	189	-	-	189	-	378	76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제1항 (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)	보건복지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3조의2제2항 (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)	국가보훈부장관은 3년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3조의2제1항 (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)	×	○ 미대상(동법 제4조에 기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함)
2	안 제13조의2제2항 (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3년 주기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의 “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“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” 용역(약 1억 8,900만원 소요)을 실시
 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소요재정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에 매년 1억원 8,9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3년 주기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억 7,8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(안 제13조의2제2항)	189	-	-	189	-	378	7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
요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